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장애계 연대회의

● 일시: 2003. 2. 12(수) 오전10:00

● 장소: 여성플라자 강의실1

■■■ 진행 순서

참여단체 인사(소개)

경과보고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

경과보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범장애계 연대 추진경과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및 골격마련 (2001년 2월, 열린넷)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토순례(2001년 7월 부산, 열린넷)
-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청원(2002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구성 및 법안 마련(2002년 6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2002년 7월~8월)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공청회(2002.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설명회(2002.12.11. 열린넷)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2002.11.8. 한국장총)
-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 1차 회의(2002.11.21)
 - 연대수락단체 총35개 단체, 장차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장애계 연대를 위한 실무단체 활동
 - 추진협준비위 위촉5개 단체(열린넷, 장실센터, 장애우, 장애인의꿈너머, 한국장총)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적차별금지법 공청회(2003.1.26, 부산장애인권리찾기연대)
-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 2차 회의(2003.1.29)
 - 범장애계 연대기구발족을 위한 공감대 형성, 총47개 연대수락

☐ 법안 단일화 작업에 대한 활동보고

-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열린넷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안이 있었으나

지난 12월부터 단일화 작업 중이며,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중임.

- 현재 진행중인 단일안은 장애계 연대기구 발족시 연대기구의 법제정위원회 (법제연구팀)으로 넘겨질 예정이며, 연대기구내에서 장애계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장애계 연대수락현황

한국장총 20개 회원단체, 장총련 4개 회원단체, 서울곰두리봉사회, 기독교변호사회, 다운센터, 대한의수족연구소, 부름의전화, 섬김과나눔회 장애인봉사대,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스카이크로벳, 열린네트워크, 장애시민행동,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푸른하늘,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재가장애인협회,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한국작은키모임, 태화샘솟는집

*현재까지 총47개 단체이나 전장애계의 연대가 구축된 만큼 참여단체

폭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측됨.

정신장애연합회(?) 정신지체인연합회. 한국 아동 변호사회. (김석우, 김석우, 박종호 변호사)
(정신장애연합회. 4개 장애인 연합회)

□ 정부 및 관계부처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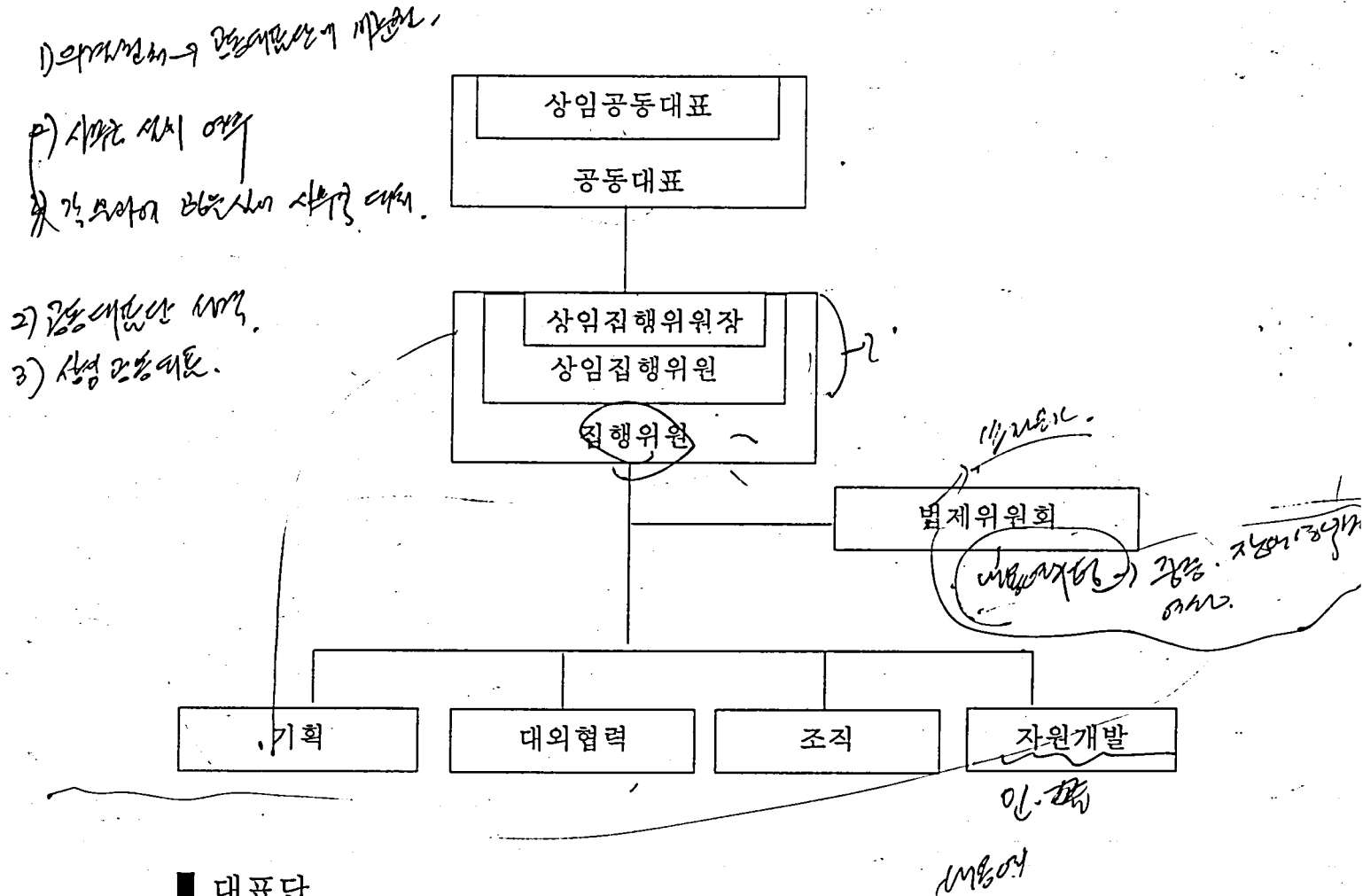
- 제16대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채택(2002.11)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대 영역차별해소를 위한 기본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2003.1.7)
- 차별금지기본법 시안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구성(2003.1.27)

11. 2/10/2020

※ 조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개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각 단체는 모든 분과활동을 전제로 함

2) 실무단체안-추진협의회(준) 2차 논의를 기본으로 한

실무단체논의안



■ 대표단

- 공동대표-연대한 모든 단체의 대표
- 상임공동대표-연대한 모든 단체내에서 활동의 효율성과 상징성
담보한 대표

■ 집행단

- 집행위원-연대한 모든 단체중 실무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
연대단체의 실무책임자
- 상임집행위원-연대한 모든 단체중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집행기구

책임성과 활동성 전제

- 상임집행위원장-집행위원중에서 실무를 총책임지는 기구

※실무진이 법제정운동에 주축이 됨

■ 실무단

- 실무팀-집행위 아래 실무를 수행하는 기획, 대외협력, 조직, 자원 개발팀 구성

- 기획: 행정, 사업계획, 조정, 로비
- 대외협력: 언론홍보, 대국민교육, 사이버, 국제협력
- 조직: 조직관리, 사업실행, 집회·시위 조직, 온라인시위
- 자원개발: 인적·물적자원 유인

- 사무처 또는 간사단체

■ 전문위원단

- 법제정위원회-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두어 별도의 법제정위원회를 설치, 법률전문가나 관심 있는 단체 모두에 개방하며 위원회 조직은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함을 원칙으로 함
- 고문·자문위원회

■ 기타 지역단체

- 지역연대
 - 시·도 지역은 지역단체의 필요에 따라 범연대기구를 모형으로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연대할 수 있음 (단, 시·도 조직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

3. 분담금

-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비용을 연대단체의 역할과 책임, 단체규모를 고려하여 각출함(단, 초기 사업을 위해 연대가입시 가입비 부담)

안) 상임공동대표:상임집행위원회:공동대표=3:2:1

- 상임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 공동대표에 참여한 단체는 일정정도의 분담금을 부담하며, 한 단체가 중복될 경우에는 상위역할에 규정된 분담금을 부담

4. 기타

1) 출범식- 일정 및 방향성

2) 운영규약-연대기구 활동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등을 규약화하여 참여 개인이나 연대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함.

3) 사회적경제성에 대한 대응.